

JUL 2022. Issue 164

# ZOOM IN TRADE

신한관세법인 월간 관세 무역 소식지

 **Where Is Grace Chang?**

03 ... 和而不同(화이부동)

 **The New Customs Study**

06 ... 인플레이션, 코로나, 전쟁  
급격한 변동시기의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결정

 **최신 관세 판례 분석**

21 ... 협정관세 적용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조심2021관0102)

 **Global Customs Ins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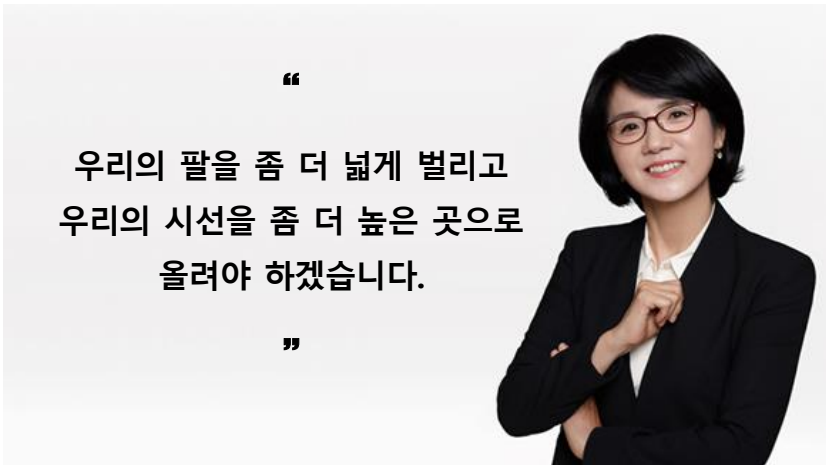
24 ...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시행과 우리의 준비자세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28 ... 관세 등 용도 외 사용승인 신청방법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31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장 승 희  
대표 관세사

총총총총 작은새가 뛰어다닙니다. 몸길이 10cm, 체중 5g정도의 작은 새입니다. 머리 부분의 노랑고 빨간 깃털이 농약대가 머리에 쓰고 돌리는 상모와 같다 해서 상모술새(gold crest)라는 이름입니다. 높은 산의 침엽수림에 살고 애벌레, 진딧물, 거미류 등의 곤충과 솔씨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라시아에 분포되어 살고 있으며 서울 부근의 겨울 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 겨울, 먹을 것도 찾기 어려운 시절을 견디는 상모술새의 전략 중에는 우리도 배워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열정**입니다. 1분에 45회나 먹이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쉬 없이 뛰고, 날며 땅속에 숨어있는 자벌레 유충을 찾아내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화합(Harmony)**입니다. 상모술새들은 춥고 긴 겨울 밤을 무리 지어 잠을 자며 버텨냅니다. 이를 위해 낮부터 서로 끊임없이 의사를 확인하고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날 밤 함께 잘 친구들을 모으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같은 종 뿐만 아니라 종이 다른 새들과도 무리를 이루어 겨울 밤을 버티어 냅니다**.\*\*\*

작고 귀여운 새들이 **혹독한 환경을 맞아 위기를 헤쳐 나가는 열정과 和而不同의 전략**은 덩치 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들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번 달 The New Customs Study는 ‘인플레이션, 코로나, 전쟁 - 급격한 변동시기의 특수관계자간 수입가 격결정’이며, 최신 관세판례 분석은 ‘협정관세 적용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 처분의 당부(조심2021관0102)’입니다. 또한 Global Customs Insight는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시행과 우리의 준비자세’이며, FTA 수출입 실무 안내는 ‘관세 등 용도 외 사용승인 신청방법’,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은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입니다.

인간도 무리를 이루고자 애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함께 합니다. 한편 자신의 안전을 위하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해서도 함께 합니다. 같은 지역 출신으로 만나고,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만나고, 같은 취미를 즐기면서도 만나고 모입니다. 동일한 대상을 좋아하여 모이게 되는 집단도 있습니다.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팬클럽이지요. 함께 모여 자신들이 좋아하는 유명인을 추앙합니다. 그러나 추앙이 지나치다 보면 막무가내로 경쟁 유명인을 폄하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방식이 자신이 따르는 유명인에 이익을 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同異不和(동이불화) 하는 소인배들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퇴임한 대통령이 살고 있는 시골 마을에 쫓아가서 확성기에 대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질 세라 도심 한복판 현 대통령의 거주지 앞에 가서 확성기를 틀어 놓고 시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불집회라는 얼토당토 않은 용어를 만들어 냅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내세우지만 결국 목적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입니다.** 남들에게 주는 피해는 아랑곳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이익 따위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동편 아니면 서편, 남쪽 아니면 북쪽 편만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동남이나 북동 혹은 남서 등은 앞에 나설 수가 없습니다. 양쪽의 극단적이고 맹렬한 비난을 감수해야만 하니까요. **자신들의 주장에 조금이라도 반한다 싶으면 극렬하게 달려드는 소인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100% 찬성을 할 수 있을까요? 100% 반대가 가능할까요? **일부 동조할 수 없는 의견도 있겠으나 그럼에도 승고한 목적을 향해 화합을 해야 할 생각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팔을 좀 더 넓게 벌리고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려야 하겠습니다. **복닥복닥하는 이 땅이 아닌 높은 하늘 위에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콩알만 하게 보이는 지구, 한국을,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문제나 미움도 희미해 지지 않을까요? **어깨 한번 으쓱한 후에 툭툭 두들겨주며 미소 지어주고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작은 새들도 화합하며 살고 있는데.... 극악스런 패거리가 사라지고 서로 돕는 무리들이 만들어지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그만 소인배를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君子和而不同 小人同異不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君子)는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화합을 이루기는 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뇌동 하지는 않으며, 소인(小人)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관을 버리고 상대방에게 뇌동하기는 하지만 서로의 생각을 조절하여 화합을 이루지는 못한다.

\*[화이부동 - 나무위키 \(namu.wiki\) 논어](#) 자료편 제23장에 나오는 구절이다.

<논어>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 : [네이버 포스트 \(naver.com\)](#)

\*\*[상모술새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wikipedia.org\)](#)

\*\*\*[\[서광원의 'CEO 를 위한 생태학 산책'\(1\) | 동물들의 겨울나기\] 5g 짜리 작은 새가 혹한을 이겨내는 비결 | 중앙일보 \(joongang.co.kr\)](#)

신한관세법인  
장승희 *Seunghee Chang*





*The New Customs Study*

# 인플레이션, 코로나, 전쟁 - 급격한 변동시기의 특수관계자간 수입가격결정

인플레이션과 코로나, 전쟁으로 원자재가격은 급등락하고, 기업의 매출과 이익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은 특수관계자간 국제거래에서 이전가격의 결정에 대해 고민이 많이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각 국가의 관세청과 국세청은 관세와 법인소득세의 부과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세액을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국제합작투자사의 가격결정, 장기계약의 가격결정, 버블의 형성시기의 가격결정, 섯다운 시기의 가격조정,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이 혼재된 경우의 가격결정, 원가 이하의 가격결정, 판매시점에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른 가격결정 등에 대해 가볍게 생각해 보고자 한다. 가격결정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고 관세평가와 국제조세상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므로 스스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서 영 진

전무이사/관세사  
Wedin8@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 외환 컨설팅
- FTA 자문

### 1. 전례없는 급등락을 겪는 국제가격의 현실

2020 년 코로나 발생으로 재화의 가격은 일시적으로 급락했으나, 갑자기 2022 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급등하는 상황을 겪고 있다. 석유, 가스, 원자재, 식량 등 오르지 않은 것이 없고, 연쇄적으로 운송비, 반제품, 완제품의 가격의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났고, 현재도 안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유가보다 곡물가격인상이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유엔이 곡물수출에 합의했다고 하지만 기대할 수 없고, 천연가스는 유럽으로 공급중단설이 나오고 있어서 더 크게 오르고 있다.

전세계가 물가급등 고통 속에 있고 이자율 인상과 긴축을 통한 물가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유가는 미국의 경우 집과 직장간 거리가 멀어서 유가가 올라도 소비를 줄일 수 없는 상황이고,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수출국과 주요 산유국은 자국의 에너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장조건의 수요공급의 현상과 달리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에너지와 곡물가격 인상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할당관세를 이용해 세율을 낮추거나 부가세를 면제하거나 보조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수요자의 불만을 줄이려 하지만, 수요가 줄어들지 않으면 국제가격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침체가 한번 지나가야 국제가격이 내려갈 수 있는데 가격급등에도 불구하고 수요를 줄이지 않는 정책들을 펴고 있으니 자원공급국은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고 한다.

식당들도 음식값을 올리지만 할 뿐 동일한 가격에 양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수요감소가 일어나지 않으니 곡물도 수요감소로 가격이 낮아지는 것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격 급등락 상황에서 기업은 수출입물품의 가격관리와 관세, 내국세의 과세가격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수입가격은 이미 올라 있어서 낮게 수입하기 어렵고, 수출가격이나 판매가격은 원가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중소, 중견기업은 대기업 납품가에 원가연동제를 시행해 주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반영하고 전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중소, 중견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상반기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원가연동제는 과거 우유가격에서 낙농가의 생산을 보조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실제로는 높은 가격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으로 인해 낙농가 경영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이를 이유로 중소기업의 원가연동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현재의 고통을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나누는 것이 상생협력관계다.

일례로 7 월 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사 중 2022 년 상반기 적자를 기록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국내 완성차업체는 고급차종에 집중하는 전략과 부품부족으로 차량인도시기가 늦어질 것을 우려한 소비자의 적극적인 구매로 할인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서 흑자규모가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가격은 여러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서 매출이나 이익의 결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하나의 이익이나 매출 목표로 가격을 결정된다고 해도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는 변수들로 인해 어떻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코로나, 전쟁, 인플레이션 등으로 가격이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제 3 자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협상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그 거래가격이 수입신고가격으로 정당하다고 해도, 수출자와 수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즉 국제거래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이전가격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고, 관세당국의 관세평가 쟁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소명할 지, 내국세 당국에는 또 어떻게 소명할 지에 대하여 향후 많은 쟁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급등락시 관세와 내국세에서 문제가 없으면서 회사가 계획한대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지 고민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 2. 최근의 이전가격결정의 일반적인 방법

수입가격은 수출판매자의 매출이고, 수입자에게는 원가이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자 이익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수입가격은 관세부과의 기준이 되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인 이전가격 또한 관세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잘 책정되어야 한다.



수출자와 수입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자가 소속한 국가의 법인소득세의 표준이 된다.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가격조정과 함께 세액추징이 뒤따르게 된다. 또한 이전가격의 결정은 매출과 함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의 가치평가와 상장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가격의 급등락 상황시 이전가격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좋을지 발생가능한 상황을 예상하여 가격결정의 문제를 고민해 보자. 이전가격을 적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방법론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정교하다. 회사마다 내부에서 결정하는 이전가격결정방법이 있고, OECD 가이드라인과 관세평가협정을 참고하여 각 기업의 가격결정방법을 확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대개는 실제 개별가격의 결정에는 원가에 연동해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식과 판매가격에 연동해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적절한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과학을 가장한 예술에 가깝다.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가격결정은 주관적이고, 오류에 취약하고, 모호한 답을 제공한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BEPS 프로젝트에 의해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과 개별기업보고서(Local File)을 작성하여 해당국의 내국세당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특수관계자간의 이전거래의 역할과 위험에 따라 적절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정착단계에 있어서 이전가격에 대해 내국세당국에서 거액을 추징하는 사례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Local File 작성시 대개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이전가격 Study 를 하기 때문에 이전가격에 대한 내국세 관점에서의 적정성 분석이 완전히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일정 수준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OECD 이전가격가이드라인이나 LOCAL FILE, TRANSFER PRICE STUDY, CUSTOMS VALUATION 에 대한 설명은 접어두고, 팬데믹과 러시아전쟁으로 발생한 국제시세의 급등락상황에 마주친 이전가격결정과 관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이 더 의미 있을 것 같다.

내국세는 이상이 없을 것 같은데, 관세는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이유는 관세평가에서는 모든 개별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가격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는 수입건별, 품목별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다루는 이전가격결정방법에 의해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총이익률, 이익의 배분 등이 비교대상기업의 이익률이나 배분이익과 유사한, 즉 하나의 가격결정방법을 만족한다고 해서 관세평가에서도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들은 가격급등락시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를 많이 고민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 문헌은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가격, 정상가격, 인정된 거래가격 등 표현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니라면 합리적으로 결정되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이전가격이라면 과세당국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관세평가에서는 수입건별과 품목별에 집중하고, 국제조세에서는 회사가 실현한 이익관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관세평가에서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특수관계자간의 가격이 제 3 자의 가격이나 시장시세나 국제적으로 공표한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물품가격이 대표적인 기간(통상 1 년) 동안에 동종, 동류의 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가와 그 역할에 따른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

OECD 가 1979 년 채택한 '이전가격과 다국적기업'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될 가격이 정상가격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더 복잡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유사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가격을 책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한 상황이 이것이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동일한 사례도 찾기 쉽지 않다.

세상에 존재하는 특수관계가 아닌 유사한 상황을 경험적으로 설명하곤 하는데 그에 대한 경험이 존재하는지 발견하기 어렵고, 또한 경험이란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과 끊임없이 결합하게 되며, 그러한 결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어떻게 이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 사례들을 넘어서 그 이상의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질문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전가격에 대한 관세평가는 WTO 관세평가협정이 시행된 지 50 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완전히 풀리지 않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2000 년대 초에는 합리적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20 년이 지난 후 그 결정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고, 결정에 참여한 사람들도 일관성이 없이 사례를 만날 때마다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 3. 에너지 가격급등과 이전가격의 결정

팬데믹과 러시아전쟁으로 급등락하고 있는 원유, 가스, 석탄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수입하는 경우에 이전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관세평가상 수용 가능한 지 생각해 보자.

특수관계자인 사우디 아람코사(aramco)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하는 S-OIL 을 예로 들어서 이전가격결정방법을 유추해서 생각해 보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아람코사로부터 주로 수입하고 있으며 연평균 도입가격은 2019 년 65 불, 2020 년 42 불, 2021 년 71 불이다. SK 에너지의 원유 수입하는 가격과 비교해보면 S-OIL 은 국제유가와 동행하는 가격으로 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회사의 이전가격결정공식을 알 수는 없지만,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통해 이전가격 관리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다.

S-OIL 은 사업보고서 상에서 원유의 구매시점의 가격과 생산제품의 판매시점이 상이하므로 마진 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당월 생산된 제품량과 동일한 수준의 판매량을 유지함으로써 재고로 인한 가격변동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럴 경우 생산으로 인한 마진 변동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S-OIL 은 특수관계자인 아람코사로부터 원유를 도입하므로 이때 결정하는 이전가격은 국제원유가에 가장 근접하도록 가격을 결정하는 로직을 사용할 것이다. 장기계약건의 경우에는 고정가격으로 책정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시장가격에 연동하도록 가격결정방식을 정하고, SPOT 가격인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시세를 반영하여 수입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계약가격인 경우에 계약할 당시에 수출자와 수입자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협의하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미래에 도입하는 가격이 제 3 자의 가격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이 장기계약을 책정하는 것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도 예측할 수 있는 계약의 방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합리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판단할 수 있다. 설사 해당 수입 건의 구매시점에 결정한 가격이 장기계약에 의한 것이라면 제 3 자 SPOT 가격과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관세과세가격을 심사하는 수입국 세관은 수입건별, 품목별로 관세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의심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관세평가를 하는 시점은 수입이후 모든 결과가 도출된 상황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제 3 자 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수입가격을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

이 때 수입자는 이전가격을 결정할 당시의 정황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을 소명할 수 없거나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가격조정을 요구받는 것을 피할 수 없고, 불복과 소송과정에서도 부당한 경정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하는 유가뿐만 아니라, 가스, 곡물, 커피 등에 대해서도 2~3 년후에는 반드시 관세당국이나 내국세당국의 가격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합리적인 설명을 위해 현재 상황에 대해 자료를 축적하고, 이전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 관세나 내국세 과세가격 관점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고 있는지 사전에 검토를 받아 보는 것이 좋겠다.

근본적으로 미국 국세청인 IRS 의 이전가격사례에서는 전쟁의 결과로 원유가격에 커다란 불안정성이 유발되어 이로 인해서 형성되는 원유의 공시가격은 독립기업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하여 시장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사용하기가 부적당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

#### 4. 합작투자계약에 의한 에너지 및 식량자원 개발시의 가격결정

유전, 가스전, 탄광, 리튬광산 등에 대한 해외자원개발과 해외 곡물, 축산물에 대해 투자를 통해 자원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때 합작투자를 한 생산자로부터 수입할 경우 합리적인 이전가격결정방법에 대한 고민도 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자원개발은 성공확률이 낮은 투자사업이므로 단독으로 참여하지 않고, 개발을 하는 자원보유국의 정부와 글로벌 투자회사, 수입을 원하는 국가의 기업 등과 합작투자계약을 통해 만든 조인트벤처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조인트벤처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에도 관세평가협정에서는 지분율이 5%가 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보아 관세평가상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원개발이나 생산투자는 최초에는 이익을 내기 어려우나 통상 20 년이나 30 년동안 도입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확보할 수 있고, 가격안정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민간기업에서 시도하고 있다.

국제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어디서든 충분한 물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민간기업에서는 자원개발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지만, 가격이 급등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위해 민간의 자원개발투자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자원개발이 가격의 변동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석유공사나 광물자원공사 같은 공기업에서 가격급등시기에 장기적인 비전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여 추진되다 보니, 부실로 자본잠식이 발생해 기관 통폐합과 같은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지난 10 여년간 해외자원개발이 공기업의 손실을 유발하는 일이라고 비난 받았지만, 어느 순간 가격이 급등하고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보니 해외자원개발을 과감하게 추진하라는 여론으로 변화하고 있다. 가격이 낮은 시기에는

정부주도로 가격은 높은 시기에는 민간주도로 지속적인 해외자원개발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해외가스전 개발에 많이 참여한 한국가스공사는 과거 몇 년간은 도입가격대비 시장가격이 낮아서 적자가 발생하니 2018년에는 정부와 국회에서는 반성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천연가스 국제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장기도입가격이 일정수준으로 낮은 가격을 유지할 수 있어 유리한 조건으로 천연가스를 수입을 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특히 종합에너지기업 BP사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BP Singapore Pte. Limited와 체결한 2022년 4월 계약은 가스공사가 지난 2018년 경쟁력 있는 LNG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국제 LNG 경쟁 입찰의 결과다. 이번 계약에 대한 주요조건 합의서(HoA, Heads of Agreement)를 지난 2019년 9월에 체결한 바 있는데, 이 시기가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였기 때문에 최근의 고유가 상황 및 국제 LNG 시세에 비춰볼 때 매우 경쟁력 있는 수준으로 평가돼 향후 국내 천연가스 가격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비난을 감수하고 과감한 결정을 한 좋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이나 투자에 참여하거나, 장기계약을 국제시세가 낮은 시기에 체결하여 국제시세가 높은 시기에 도입할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어도 제 3자로부터 수입하는 가격보다 현저히 낮거나 도입할 당시의 국제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가격을 책정할 당시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적정한 위험과 이익을 예상하고 결정한 가격이라면 관세평가상에서도 합리적으로 결정된 가격으로 볼 수 있다.

물론 2~3년 후 가격정보분석을 한 세관에 의해 가격차이에 대한 소명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수입자는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소명하기 위해 계약 결정 당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가격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란 것을 예측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합작투자계약(조인트벤처)을 체결할 당시 계약당사자들은 특수관계에 있지 않다. 서로간 동등한 지위에서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가격결정방법을 정하게 되는데 만약 가격결정방법이 계약시점의 국제시세에 연동한다면 가격급등기에는 구매자측 이익이 증가하게 되고, 가격급락기에는 공급자측 이익이 증가하게 된다.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합작투자회사는 시세의 급등락과 관계없이 생산원가에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결정은 특수관계가 아닌 장기계약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가격결정방법이다.

또한 국제시세가 급등했다고 수입가격을 인상하면 구매자측은 배당받기 전까지 과다한 물품대금 지불로 자금부담이 발생하여 구매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국제시세가 급락했다고 수입가격을 인하하면



생산자측에 손실이 급증된다.

시장가격의 변동에 적게 영향받는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자 할 때 합작투자가 이루어진다. 수입당시 국제시세와 관계없이 장기계약관계가 합리적으로 판단된다면 수입가격이 인정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즉, 국제정세와 팬데믹으로 가격급등락의 상황에서도 합작투자회사는 약속한 물량만큼 계약 당시에 정해진 가격으로 수입을 하게 되고, 이때 가격이 수입당시의 급등락하는 국제시세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도 합리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 5.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에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의 결정방법

수출자와 수입자는 계약 당시 시장 및 경제상황 아래 수입가격을 결정하지만, 세관은 수입 이후 수입신고 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다. 즉 수입가격은 당시의 예측에 의해 결정되지만, 가격에 대한 평가는 수입후의 결과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국제시세가 존재하는 상품시장에서 상품가격의 버블의 형성은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의 수요부분에 대거 몰려들어 시장의 균형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장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때 판매자와 구매자는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기관투자자들이 단체로 매도로 돌아설 경우에는 가격폭락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 때에도 마찬가지로 수출자와 수입자는 혼란상황속에서 거래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인 상황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면, 가격비교는 동일시기인 1개월, 2개월, 3개월을 기준으로 가격을 비교하게 되는데, 특수관계자가 시장가격을 버블당시의 가격을 추종하여 결정하지 않고 자신의 원가기준가격이나 재판매기준가격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한 것이 시장가격과 차이가 크다고 하여 비합리적인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면 관세평가나 이전가격세제에서 허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합리적인 가격결정방법은 결과적으로는 과세당국의 결정에 의해 조정여부가 결정되지만, 거래당사자가 결정한 방법이 합리적인지는 가격을 결정할 당시에 예측이 합리적인가에 달려있다.

물론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나 폭발하는 시기에 따라 시장의 판매가격의 변동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일정기간(1개월 또는 3개월)마다 이전가격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이고, 너무

이상치인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협의할 당시의 예측이 합리적이라면 이전가격은 제 3 자의 가격이나 국제시세와 달리 결정되어도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상 허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정보의 유통이 빨리 이루어지는 현재의 시장은 투기현상이 강화되어 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이러한 상황이 순환하여 가격은 더욱 증대되게 된다. 버블이 형성되는 투기적 시장에서 특정 품목의 가격비교에 의해 관세평가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시장의 왜곡상황에 대한 설명과 자료확보를 통해 이전가격의 적정성을 더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 6.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섀다운의 지속시기 이전가격의 변경

코로나 이전의 일반적인 경제가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기업은 매출과 비용에 대한 예상을 하고 합리적인 이전가격을 어느 정도 크지 않은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생산국에서의 공장 섀다운과 수입국에서의 시장 섀다운은 매출과 비용을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차이가 났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예상에 의해 결정한 이전가격결정방법도 무너지고 말았다. 어느 회사도 팬데믹 상황에서 이전가격결정방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았다.

팬데믹과 전쟁으로 시장의 기능이 정지되고, 공급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시기가 길었던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간에 결정한 이전가격과 그 물품의 판매에 따른 매출이나 이익이 예상한 정도를 벗어난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2~3 년 후에 팬데믹과 전쟁이 마무리되고 정상화되면 세관과 세무당국은 정상적으로 합리적인 시장이라 생각하고 가격심사나 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우선 수입국의 섀다운으로 수출한 물품이 판매되지 못해 수입국의 유통기업에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수출한 물품의 가격이 높은 상황이 발생한다. 매년 수입후 이전가격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스스로 이전가격조정을 할 것이므로 관세와 세무당국으로부터 가격조정을 당할 가능성은 낮아 진다. 하지만 스스로 이전가격조정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기업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관세평가에서는 수입하기 전 결정된 가격을 수입 후 조정하기로 수입신고전 세관당국과 협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 이후 스스로 변경한 이전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수입가격은 수입전에 마지막으로 결정한 가격이고 수입신고 이후에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당초 수입가격이 너무 높았다고 판단하여 낮은 가격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정하지 않고, 합의한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관세를 환급하지 않고 있다.

그 반대로 수입후에 이전가격을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은 실제 거래가격의 조정이든 사후귀속이익의 지불이든 쟁점을 뒤로하고 과세가격을 스스로 수정신고할 수 있고 관세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이는 수입 전 최종적으로 결정된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인정하므로 수입 후 발생한 가격조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수입후에 증가되는 가격으로 수정신고(세금을 더 납부하는 것)는 납세자의 스스로 결정에 의한 것이고 수리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추가 지불은 사후귀속이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기업은 통상 4월, 7월, 10월, 12월에 그 해의 매출과 원가를 분석함으로써 이전가격을 조정할지 판단하게 된다. 코로나 섯다운이 2020년 2월부터 시작되어 약 6개월, 2021년과 2022년에는 수시로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 미판매로 인한 수입국가의 손실을 보전하고 향후 매출을 예상하여 높은 이전가격을 낮게 조정하여 수입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 이 낮은 가격이 어떤 관세평가상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해 보자.

즉 일정기간은 높은 가격으로 일정기간은 낮은 가격으로 1년 동안 이전가격을 운영하여 수입국 구매자의 이익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면 법인세관점에서는 그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관세는 건별, 품목별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낮게 책정한 건별 수입가격이 있는지, 그런 품목이 있는지 확인하고 수입가격을 조정하려 들 것이다.

이 때 세관이 결정하고자 하는 가격은 3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동일시기 동종 동류물품의 제 3자의 가격을 발견하고자 할 것이다. 가격을 비교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둘째로 그것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높게 신고된 최초의 가격을 정상가격이라고 판단하여 그 가격만큼 조정하고자 할 것이다.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면 매출감소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가격이 정상가격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정하고서 말이다.

하지만 팬데믹이 발생한 상황도 당시의 경제상황이므로 미판매상황이 계속되는 과정에 이전가격을 어떻게든 낮게 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팬데믹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가격은 상황의 변화로 인해 불합리한 가격이 되므로 최초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하지만 많은 개도국에서는 최초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낮게 조정한 가격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된 가격은 납세자가 변경을 요구할 수가 없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미 수입신고된 가격을 낮게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후 수입될 물품의 가격을 수입전에 인하한다면 조정된 가격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인하 조정을 얼마나 할 것인가, 합리적인 인하 범위는 얼마인가는 추가로 고민할 사항이다.

회계기간 경과 후 수입 후 이전가격조정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수입할 물품의 이전가격을 인하하는 것 밖에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인하 조정된 가격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조정할 때 앞의 기간동안 손실분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충분히 조정할 것인지, 아니면 가격조정 이후 수입기간동안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만큼만 소폭 인하조정하는 방법 2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전 수입기간까지 손실까지 감안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이미 수입이전에 결정된 가격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쟁점의 가능성이 있다. 가격조정 결정 이후 수입기간 동안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조정할 경우에는 타당한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

앞의 손실분까지 보상하는 수준으로 충분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당해 수입이전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가 있는 거래로 보아 특수관계에 영향을 받아 낮게 형성되는 가격 또는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즉 반대급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조건 또는 사정에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고 하여 수입가격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관세평가협정 제 1 조의 주해에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원가에 일정기간동안(1 년) 충분한 이윤을 회복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면 해당 기간 동안의 수입가격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높은 이전가격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낮은 이전가격으로 손실을 보상하고 나머지 기간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혼재되어 있더라도 일정기간에 수입가격이 원가와 이윤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세관당국이 거두어 들이는 관세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동일한 중간가격으로 신고된 경우나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나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징수하는 것이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수입전에 세관에 이전가격조정프로그램을 신고한 수입자는 당연히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을 중간가격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확정가격신고를 하겠지만, 팬데믹의 발생은 일반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므로 높은 이전가격과 낮은 이전가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두 인정하여 조세의 평등을 꾀할 수 있다는 견해를 펼 수도 있겠다.

## 7.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이 혼재된 경우 낮은 가격을 추정대상으로 삼는 문제점

일부 개도국에서는 높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판단하여 동일화주의 가격비교를 통해 낮은 가격인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관세추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당국 세관의 판단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될 수 있다.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을 단순비교를 통해 높은 가격이 정상가격이라는 전제를 하는 것은 재원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개도국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다. 일정기간동안 수입물품의 관세평가를 묶음으로 하든, 개별 수입물품을 기준으로 하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건별로 품목별로 정상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셋다운 전 가격과 셋다운 후 가격의 차이를 이용해 그 갭(GAP)만큼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개도국세관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셋다운 전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일반적인 경제상황이므로 이를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한 가격이 합리적인 예측가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팬데믹 셋다운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경제상황하의 가격으로 수입할 경우 수입자에게 큰 손실이 발생해서 거래가격을 낮춘 경우에 셋다운 전 가격과 셋다운 후 가격을 비교하여 정상적인 경제상황에서의 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아 동종동류의 가격으로 적용하여 세관이 결정한다면 관세평가상 합리적인가? 당초 일반적인 시장가격으로 책정한 가격대로 셋다운기간에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세관이 팬데믹 상황을 일반적인 시장의 가격상황과 혼동하거나 무시하고 과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 관세평가는 수입시 마다 개별물품 또는 품목별로 수입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개별 또는 품목별로 가격책정이 물품의 원가와 이윤을 보장하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원가와 이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은 낮은 가격의 물품의 가격은 거래가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격을 정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왔다.

## 8. 생산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전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최초에 국내에 진출하고자 하는 경우와 코로나로 셋다운으로 수입국에서 판매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서 수출자가 원가 이하로 수출하는 경우에 이때 이전가격은 관세평가상 인정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산자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가격이 제 3 자 비교가격과



근사한 수준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판매상황을 검토 또는 비교가격 중 어느 하나가 충족되는 경우라면 거래가격은 인정될 수 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동등한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생산원가 이하로 수출하더라도 수입국의 판매자에게 적당한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가격이라면 해당 가격은 인정할 수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6 년 OECD 이전가격 개정안에서는 적절한 기간 내의 반복적 손실은 시장침투를 위한 저가전략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생산업체는 신규시장진입, 기존시장의 점유율증가, 신상품소개,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차단과 같은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손실을 내는 저가전략을 택한다. 그러나 특별한 저가전략은 장기적 이익증진의 목적으로 한정된 기간 동안만 취해져야 한다. 그러한 가격전략이 합리적 기간을 넘어 계속된다면 이전가격조정이 필요하다. 특히 여러 연도의 자료를 비교할 때, 비교대상 독립기업보다 오랜 기간 동안 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면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이전가격 결정이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는 경우라면 관세평가에서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9. 수입국 판매시점에 시장의 상황에 변화가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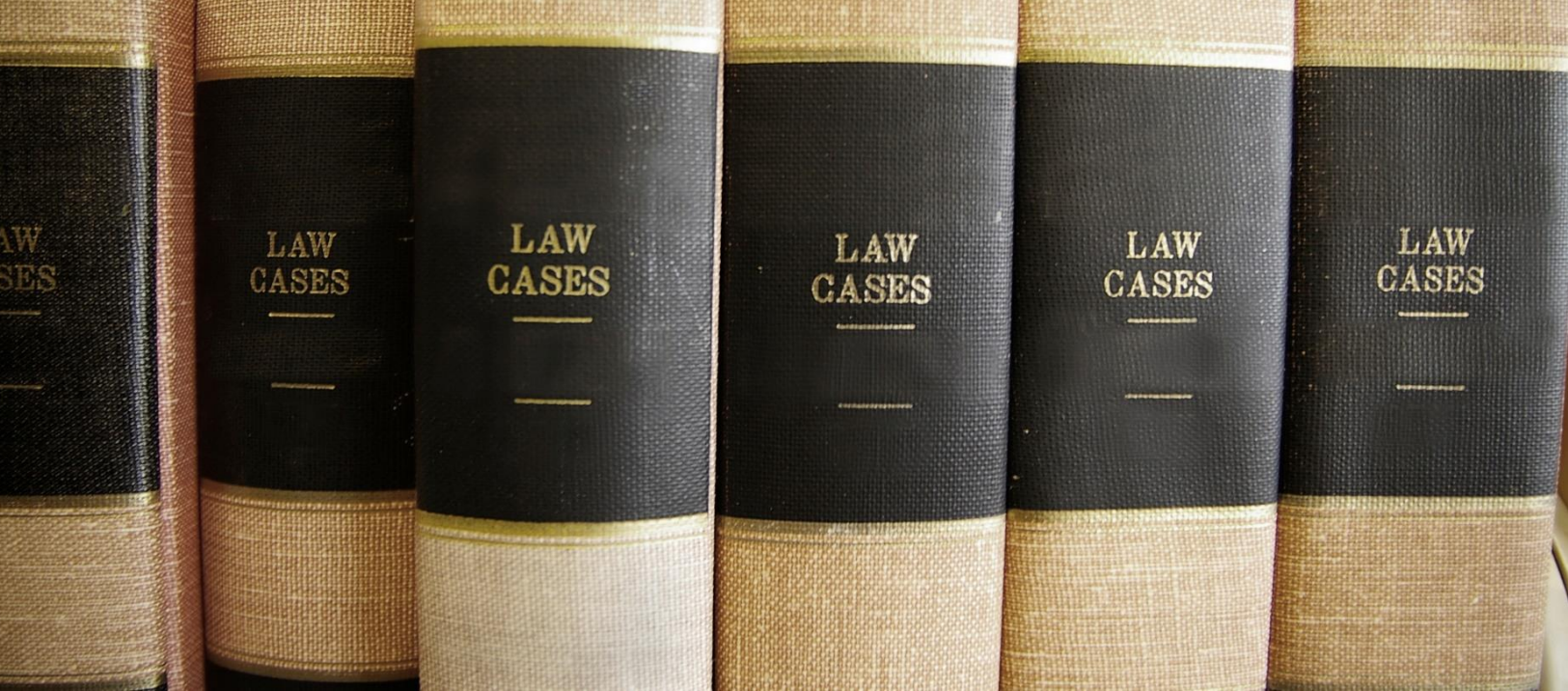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서 물품의 수입은 생산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일정물량이 수입되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량구매자가 구매를 미루는 과정에 판매가격이 크게 인하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수입가격보다 낮은 판매가격이 형성되는 것이 모델변경이 빈번한 통신장비, 전자제품 등이 그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이나 아시아국가에서 생산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한 품목이 배로 운송될 경우 통상 45 일정도 소요되었는데 코로나로 운송과 하역시간이 늦어져서 60 일 이상 경과 되었다고 하자. 그 사이 계절도 지나고 경쟁업체도 대폭할인을 실시하여 판매가격을 수입가격보다 낮게 50% 인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전가격에 대한 처리방안은 어떻게 해야 할까? 판매가격이 조정되었으므로 수입자의 역할과 위험을 감안하면 수입가격도 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관은 수입가격은 이미 통관된 가격이므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역할과 위험을 감안할 때 판매가격보다는 낮게 수입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지만, 수입 이후에는 가격조정은 인정하지 않는 원칙은 관세평가에서 변경되지 않고 있어서 과세가격을 인하 조정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품목을 다루는 기업에서는 수입후 이전가격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용이하고, 팬데믹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판매가격의 대폭 할인에 대해서는 수입 이후에 수입가격을 조정하도록 구매자는 판매자와 협의하고, 초과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환급신청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최신 관세판례 분석

# 협정관세 적용 오류에 따른 수정신고에 대한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의 당부(조심2021관0102)

## 1. 사실관계

- 청구법인은 2016.09.27.부터 2017.09.20.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처분청에 한-미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 이후 2021.04.12.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의 점검 및 시정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신고에 앞서 가산세 면제 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가산세 면제 불승인을 통지하였습니다.



이 우 슬

관세사

wslee@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FTA컨설팅
- 관세환급

## 2. 판단

### (1) 청구인 주장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원재료 공급경로 및 구체적인 생산공정 등을 알 수 없었으며, 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판정에 있어 제조원료, 재료의 원가와 같은 수출자(제조자)의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가 다수 존재하므로 수입자의 입장에서 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신뢰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한 사실에 더하여 해당 원산지증명서상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까지 수입자의 의무로 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자율점검 안내문을 수령한 후, 쟁점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쟁점수출자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폐업한 상태에서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하였고, 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실제생산자가 AAA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약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부정 적용의 혐의가 있었다면 처분청은 자율점검안내문이 아닌 원산지조사 통지를 하였을 것이므로 자율점검에 따라 청구법인 스스로 오류를 발견하여 수정신고 전 가산세를 면제 신청한 이 건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합니다.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 시 협정세율 적용신청서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신고한 부분은 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의 단순한 신고오류이며, 이를 이유로 처분청이 수입자의 의무해태를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자와 수입시기가 다른 수입 신고건에 대하여 그 중 하나의 수출자에 대한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다른 수출자에 대한 수입 신고건의 원산지가 잘못되었다고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가산세 면제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합니다.

### (2) 처분청 주장

- 청구법인은 ① 쟁점수출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를 신뢰한 것에 대해 청구법인의 귀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선행조사 물품에 대한 서면조사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에 오류 등이 있음을 사전에 인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의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면제 받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협정관세의 신청은 수입자가 적법하고 유효한 증빙서류가 갖추어졌을

때 할 수 있으며, 원산지 증빙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수입자의 의무 사항입니다.

- 한-미 FTA에서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2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부가가치변경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하기 전에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한-미 FTA 협정상 쟁점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구법인에게는 협정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수입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귀책이 존재합니다.

- 따라서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에 있어 원산지와 관련한 최소한의 주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귀책이 청구법인에게 존재하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합니다.

### 3. 결론

심판청구 결과, 쟁점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HS 2단위 세번변경기준임에도 청구법인은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으로 기재된 쟁점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에 기초하여 협정관세를 신청한 점, 쟁점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쟁점수출자나 생산자인 AAA사에게 문의한 사실 등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달리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관리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산세 면제신청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4. 시사점

FTA 자율점검 또는 원산지 조사로 인한 수정신고, 추징과 그로 인한 관세 불복청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 판례에서 시사하는 바처럼, FTA 협정관세를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적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에 대한 이해 및 FTA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등, 수입자 및 수입신고 대행자인 관세사는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Global Customs Insight*

#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 시행과 우리의 준비자세

2022년 6월 21일부터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The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신장 위구르자치구(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을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미국수입금지조치가 시행되었습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지역에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최종 완제품뿐만 아니라 투입된 원재료까지 미국시장 진입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조치이며, 미국으로 직접 수출 및 제3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시, 수출자의 사전 확인 및 주의가 필요합니다



**차 미 정**

팀장/관세사  
mjcha@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통관 법률 자문
- 수출입 요건

**1. 배경**

미국 관세법 (1930) 307조는 강제노동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제조, 생산, 채굴된 어떠한 물품이라도 금지하고 있으며, CBP는 강제노동이 사용된 외국 생산, 제조 물품에 의심이 있는 경우 항구에서 화물이 미국으로 반입되지 못하도록 반입보류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s)을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307 (§ 307) of the U.S. Tariff Act (19 U.S.C. §1307)** "All goods, wares, articles, and merchandise,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wholly or in part in any foreign country by convict labor or/ and forced labor or/and indentured labor under penal sanctions shall not be entitled to entry at any of the port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importation thereof is hereby prohibited, ..." \*미국관세법(1930) 307조

미국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소수민족 및 종교적 소수집단에 대한 강제 노동, 자유에 대한 억압 하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차단하고자 CBP는 2019년부터 강제노동과 연관된 중국 기업의 특정 품목(면화, 토마토, 폴리실리콘, 헤어제품 등)에 대해 반입보류명령(WRO)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22년 6월 21일부터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은 **특정품목이 아닌 위구르에서 생산되는 모든 생산품으로 확대 적용**되어 미국 수출 시, 수출자 및 수입자의 사전 준비 및 대응이 요구됩니다.

**2. 대상**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생산, 제조, 채굴 등이 되었거나, 위구르 외의 지역 및 제 3국에서 이러한 원재료를 결합하여 생산된 물품 또한 포함 됩니다. 예를 들면 위구르산 면화로 베트남에서 직물과 의류 등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위구르산 토마토를 이탈리아에서 수입하여 토마토 소스, 토마토 통조림 등을 만들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미국에서는 수입이 금지됨을 의미합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이미지출처: 위키피디아

### 3. 절차

입항지 세관에서 화물이 억류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수입하려고 하는 물품의 공급망 중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신장 위구르의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를 30일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자는 전략적으로 CBP의 지침을 준수 및 CBP의 모든 문의에 대해 완벽하게 응답이 가능해야 하며, 물품의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영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의한 세관의 추정을 해소시키기 위해 요구되는 증빙자료는 관세법에 따른 반입보류명령(WRO)에 의해 증빙하여야 하는 수준보다 높습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신장위구르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CBP에서 판단한 경우에는 미국법률을 준수한다는 조건으로 억류를 해제합니다. 만약 화물이 억류되는 것으로 결정되면, 수입자는 재수출하거나,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해제될 방법을 찾아야 하며, 수입자는 시간, 노력, 물류 비용 등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 4. 우리의 준비자세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는 전세계에서 조달될 수 있는 특성상, 제조 공정별 투입되는 원재료의 원산지 및 전체 공급망에 대한 관리가 더욱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으로 면 티셔츠를 수출 시, 면화 채취부터 티셔츠를 만들기 위한 전체 공급망을 표시하고, 공정에 관련한 당사자들을 명시 및 취득과정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수입자가 공급자에 대해 신중히 체크 및 원산지에 대해 관리하고,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출자 또한 물품이 공급되는 과정부터 강제노동이 없었음을 기록하고, 증빙하여야 하는 구비의무를 수입자와의 계약단계부터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에 CBP에서 공표하는 위구르 강제노동 기업리스트(UFLPA Entity List)에 해당하는 기업인지, 신장지역에서 생산되어 제3국에서 결합되는지 등 제조공정 별 사전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EU, 캐나다, 호주에서도 강제노동제품의 수입규제를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강제노동사용은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통상에 있어서도 장애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

- 1)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 WRO Frequently Asked Questions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gov\)](#)
- 2) Strategy to Prevent the Importation of Goods Mined, Produced, or Manufactured with Forced Labor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port to Congress, June 17, 2022)
- 3)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UFLPA) Public Law No. 117-78 December 23, 2021 Importer Overview
- 4) Forced Labor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gov)
- 5)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대외경제정책연구원 22.06.20)

관세사 차미정 [mjcha@shcs.kr](mailto:mjcha@shcs.kr)





FTA 및 수출입 실무 안내

# 관세 등 용도 외 사용승인 신청방법

## 1. 개요

수입통관 실무를 하는 담당자라면 반드시 한번은 경험하게 되는 업무에 하나로 용도 외 사용승인 신청이 있다. 이론상으로 용도세율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지만 화주가 특정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수입물품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거나 실제 재수출감면을 받은 품목이지만 재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하게 되는 업무이다. 이하에서는 용도 외 사용승인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 규 태

지사장/관세사

Ktoh@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수출입 통관
- 검역/요건

## 2. 관련 법령

관세법 제83조 용도세율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

관세법 제103조 관세 감면물품의 용도 외 사용

관세법 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

## 3. 용도외 사용승인 적용 대상

관련 법령을 기준으로 용도세율 적용 물품, 재수출 면세 또는 감면을 받은 물품, 관세 등 감면받은 물품과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물품 중에서 해당 용도나 감면목적에 맞게 사용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할 납부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발생 된다면 용도 외 사용승인 신청을 화주가 직접 신청하거나 신고한 관세사가 대행 할 수 있다.

실제 유니패스에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다.

신청인

신청서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용도외사용 <input type="radio"/> 양수도 <input type="radio"/> 임대 <input type="radio"/> 면제		
적용물품구분	<input checked="" type="radio"/> 관세감면 <input type="radio"/> 분할납부 <input type="radio"/> 용도세율적용 <input type="radio"/> 재수출면세		
*사업자등록번호	<input type="text"/>	*상호	<input type="text"/>
*대표자 성명	<input type="text"/>	*사업의 종류	<input type="text"/>
*주소	<input type="text"/>		

## 4. 용도 외 사용물품 명세 작성

용도 외 사용승인 신청은 기본적인 신청인 정보와 업체정보를 기재하고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작성한 후 수입신고 품목에서 용도 외 사용이 되는 물품명세를 작성하게 된다. 실제 수입신고 필증에서 적용품목을 기재하게 되는데 화주의 수입신고 필증이 신고대행을 하는 관세사와 다른 관세사를 통해 진행된 건이라도 정보조회는 화주가 심사정보 조회 권한을 부여해주면 수입신고 번호만 기재하더라도 감면 품목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등록 할 수 있다.



**용도외 사용(양도,양수,임대)물품 명세**

\* 정보조회는 납세의무자(화주)로부터 권한위임을 받아야 합니다.

납세의무자(화주)는 [My메뉴 > 서비스관리 > 자사실적 권한 설정] 화면에서 '심사정보 조회' 권한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번호	<input type="text"/>	통관지세관	
수입신고수리일자		관세감면(분납)액	₩ <input type="text"/>
당초감면(분납)법조항		적용용도세율	<input type="text"/> %
이미 납부한 관세액	₩ <input type="text"/>	당초용도	<input type="text"/>

실제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 필증의 규격을 작성할 시 실제 변경되는 신고 수량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실무상 용도 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변경된 관세액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해당 수입신고 반장이 직접 계산을 하거나 추가관세액을 산출하여 세액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가 있다. 추가 발생하는 관세 등은 아래와 같이 고지서 발행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할 수 있다.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1쪽)

관세납부전용계좌 : 농협 790-0278-9659-445

회계구분	회계년도	세관사업자번호
관세청소관 일반회계	2022	224-85-25114

납부기한	2022년 06월 30일
발행일자	2022년 06월 15일

**5. 유의사항**

용도 외 사용승인 신청은 유니패스를 통해 용도 외 사용승인 신청을 위한 사유서와 관련 수입신고 필증 등을 전자 첨부하여 할 수 있으며 통상 처리 기간은 4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간 경과 시 담당 반장에게 유선으로 처리지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추가 납부 할 관세 등의 고지서는 승인 후 유니패스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만약 확인이 안 되면 팩스로 담당 반장에게 받아서 납부기한에 납부를 해야 한다.

통관담당자는 특히 재수출조건 수입일 경우 재수출 기간을 확인하여 수출 진행을 확인 후 재수출 이행 보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 이행이 어려우면 화주가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용도 외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관세무역개정 내용과 의견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1. 개정 이유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 수출목록 변환 신고 시스템을 통한 수출신고 시에도 수출실적을 인정하는 등\* 일반수출신고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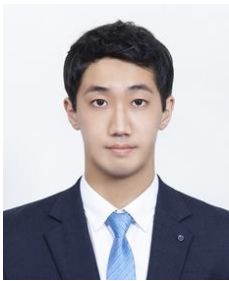
\* 제조업체일 경우 간이징액환급 가능 및 재반입 시 면세대상으로 인정

[목록통관제도 개선]

- 여행자휴대품의 중복처리절차 개선 및 실무상 애로사항 해소
- 목록통관 검사생략규정 신설 등 규정 재정비로 업무처리 근거 마련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 최신화 및 통일화



김 태 경

관세사

tkkim@shcs.kr

[ PROFILE ]

- 신한관세법인
- 기업심사 및 조사
- 외국환거래 자문
- 무역거래 자문

## 2. 주요 개정내용

### [1]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지원

-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간이)수출신고서 서식 개정(별표 12 등)

### [2] 목록통관제도 개선

- 여행자휴대품(영 제246조제4항제1호)을 목록통관대상에서 제외(제36조)
  -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 반출신고절차가 있어 목록통관은 불필요한 중복절차에 해당
  - 여행자휴대품에 대해 송품장을 제출 받는 절차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목록통관 서류 및 전자문서 제출 구분 명확화(제38조~제45조)
-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규정 완화 및 생략규정 신설(제40조)
  - 현시스템상 필요한 경우 검사생략을 하고 있어 규정 반영 필요

### [3] 관세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

- 목록통관대상에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환급물품을 추가(제36조제1항9호)
  - 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반영
  - \* (신설 내용)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 ...

### [4] 그 밖에 업무흐름에 따라 조항을 이동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라 용어 순화 및 조문 정리

- 검사대상 반입보고 조항이동(제52조제5항 → 제17조의4제3항)

## 3. 시행일자

2022년 5월 12일 시행

## 4. 개정에 대한 의견

수출실적 인정 범위가 늘어남에 따라 전자상거래 수출기업이 환급, 면세를 포함한 여러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록통관 규정의 경우 실무에 맞게 개정되었습니다.

# THE BEST CUSTOMS ADVISOR

We make the difference for your successful business!

